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9.01.09(화) / 총1매(본문1)
담당 부서	부동산평가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한정희, 사무관 김세묵 • ☎ (044) 201-3425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높지 않으며,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서민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.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보도참고자료(1.7(월))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그동안 가격이 급등해 고가 부동산에 해당되나 공시가격이 시세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해 형평성 훼손이 심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며,
 -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(전체의 95% 이상)은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.
 - 또한,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이 30%까지 오를 수 없으며, 설령 공시가격이 30% 오르더라도 어제 복지부에서 밝힌 것처럼 공시가격이 평균 30% 오르더라도 재산보유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약 4% 수준으로 예상됩니다. (붙임 참조)
- *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인상률은 약 2% 수준 예상
-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밀한 공조체계 하에 공시가격 인상이 복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,
 - 건강보험료는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여나가고,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 조정 등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조선일보, 1.9(수).) >

◆ 30% 상승땀 기초연금 9만명 탈락, 건보료는 1.2만원씩 올라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김세목사무관(☎ 044-201-342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 보건복지부		<h1>보 도 설 명 자 료</h1>		
배 포 일	2019. 1. 8. / (총 3매)		담당부서	보험정책과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과
건강보험료 관련	과 장	정 경 실	전 화	044-202-2710
	담 당 자	강 슬 기		044-202-2702
기초연금 관련	과 장	서 일 환	전 화	044-202-3670
	담 당 자	민 유 정		044-202-3672
기초생활 관련	과 장	노 정 훈	전 화	044-202-3051
	담 당 자	강 태 수		044-202-3054

**“공시가격 30% 인상 시 건강보험료 인상폭은 4% 수준으로 예상,
기초연금 수급대상은 65세 이상 인구의 70% 수준을 유지”**

(1월 8일자 조선일보 “세금·건보료 크게 인상...기초수급자 탈락 속출”)

- 보건복지부는 “공시가격이 인상되더라도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이 없는 경우도 있는 등 지역가입자 가구의 재산보유 수준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 인상여부·수준이 다르며, 기초연금은 공시가격 변동에 상관없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70% 수준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음”을 알려드립니다.

□ 기사 주요내용

- 공시가격이 30% 인상되면 건강보험료는 평균 13.4%가 오르고, 약 10만 명이 기초연금 수급권을 잃게 될 전망

□ 설명내용

1) 건강보험료 관련

- 공시가격이 30% 인상될 경우 재산보유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약 4% 수준으로 예상됩니다.

*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인상률은 약 2% 수준 예상

- 공시가격 인상 시 **건강보험료 인상 여부, 인상 수준** 등은 지역가입자 가구의 **재산 보유 수준**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.
 - 공시가격이 30% 오를 때 경우에 따라서는 **건강보험료가 오르지 않을 수도 있으며,**
 - * 건강보험료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'재산보험료 등급표'를 기준으로 산정되어, 공시가격 인상 시에도 동일 등급이 유지될 경우 보험료 인상 없음
 -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최대치는 월 2만7000원 이내로, 이는 지역가입자가 재산을 공시가격 50억 원 이상 보유하는 경우입니다.
-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.
 - 공시가격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을 모니터링하는 한편, '22.7월 예정된 부과체계 2단계 개편*'을 통해 건강보험료 중 재산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낮춰나갈 계획입니다.
 - * 재산보험료 산정시 재산 공시가격 8,333만 원(과세표준 5,000만 원) 공제 계획

2) 기초연금 관련

- 기초연금제도는 소득하위 70%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- 보건복지부는 「기초연금법」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소득하위 70%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을 매해 조정하고 있으며,
 - 주택·토지의 공시가격의 변동을 반영하여 선정기준액도 노인 인구의 70%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될 예정입니다.

- 이 과정에서 주택 등을 소유하신 노인 중 재산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분들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,
 - 반대로, 기존에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분들이 새롭게 수급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.
- 향후 공시가격의 변화가 기초연금 수급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선정기준액 조정 등 기존 수급자가 갑작스런 수급탈락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.

3) 기초생활보장 관련

-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*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.
 - * 생계급여 30%, 의료급여 40%, 주거급여 44%, 교육급여 50%
- 2019년 새롭게 변동되는 공시지가는 2020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(4~6월) 과정에서 반영 될 예정입니다.
 - 향후 공시지가 변화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수급 탈락 등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재산기준 완화 등 방안을 마련 할 계획입니다.



보건복지부

보도 설명 자료

배 포 일	2019. 1. 9. / (총 3매)	담당부서	보험정책과
과 장	정 경 실	전 화	044-202-2710
담 당 자	강 슬 기		044-202-2702

“공시가격이 오를 때 건강보험료가 20% 이상 오르는 경우는 예외적이며, 공시가격 30% 인상시 보험료 30% 인상은 어려움”

(1월 9일자 한국경제 “소득 없고 집 한 채뿐인 은퇴자도 건보료 20% 이상 오를 듯”, 조선일보 “30% 상승엔 기초연금 9만명 탈락 건강보험료는 1만2000원씩 올라”)

- 보건복지부는 공시가격이 30% 인상될 경우 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4% 수준이며, 공시가격 인상시 보험료가 20% 이상 오르는 경우는 극히 드문 사례임을 알려드립니다.

□ 기사 주요내용

- 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은퇴 후 집 한 채만 보유한 경우에도 건보료가 20% 이상 오르는 사례 속출 예상
- 공시가격 30% 상승시 월 평균 건강보험료는 13.4% 인상되며, 지방의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30% 초과

□ 설명내용

- 재산보험료는 지역 간 구분 없이 ‘재산보험료 등급표’에 근거하여 산출되므로, 공시가격이 30% 인상될 때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평균보험료 인상률이 30%까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.

○ 공시가격이 30% 인상될 경우 재산보유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약 4% 수준으로 예상되며,

*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인상률은 약 2% 수준 예상

- 특히, 기사에서 언급된 공시가격 5억 원대 수준의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30% 인상될 때 건강보험료는 평균 3% 수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.

○ 기사에서 언급된 공시가격 30% 인상시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13.4% 올라간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작년 9월 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확성이 낮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.

- 해당 분석자료는 평균 재산보유액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결과로 가구별 다양한 재산 보유 수준과 보험료 산정 기준 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.

- 1월 8일 보도설명자료에서 밝혔듯이 공시가격 인상 시 건강보험료 인상 여부, 인상 수준 등은 지역가입자 가구의 재산 보유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.

* 건강보험료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'재산보험료 등급표'를 기준으로 산정되어, 공시가격 인상 시에도 동일 등급이 유지될 경우 보험료 인상 없음

○ 기사에서 보험료가 20% 이상 오르는 것으로 언급된 사례는 공시가격이 각각 82%, 99%가 오르는 극단적인 경우이며, 공시가격 1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하면서 소득이 없다는 것도 예외적입니다.

*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는 대부분 재산도 없거나 소액의 재산 보유, 소득 없는 지역가입자 중 공시가격 3억원 초과 재산 보유한 세대는 4.5% 수준

○ 보건복지부는 국토부 등 관계부처 간 공조체계 하에서 공시가격 변동 수준과 건강보험료 영향을 면밀하게 살피고 있습니다.

- 향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('18.7월~, 1단계 시행)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해 재산보험료 인하 효과 등을 점검하고, 보험료 중 재산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낮춰나갈 계획입니다.

* 건강보험료 1단계 개편을 통해 339만 세대(재산보험료 내는 지역가입자의 56%)의 재산보험료 40% 인하